

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·거주불명등록 공고

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5년 11월 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대상자 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신고사항
임**	김** 1972.08.27	갈현로29길 14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, 제11조에 따라 거주 불명등록 처리되며,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담당자 : 이창현, 문의전화 : 02-351-5127)

2015년 11월 4일

갈현제2동장

